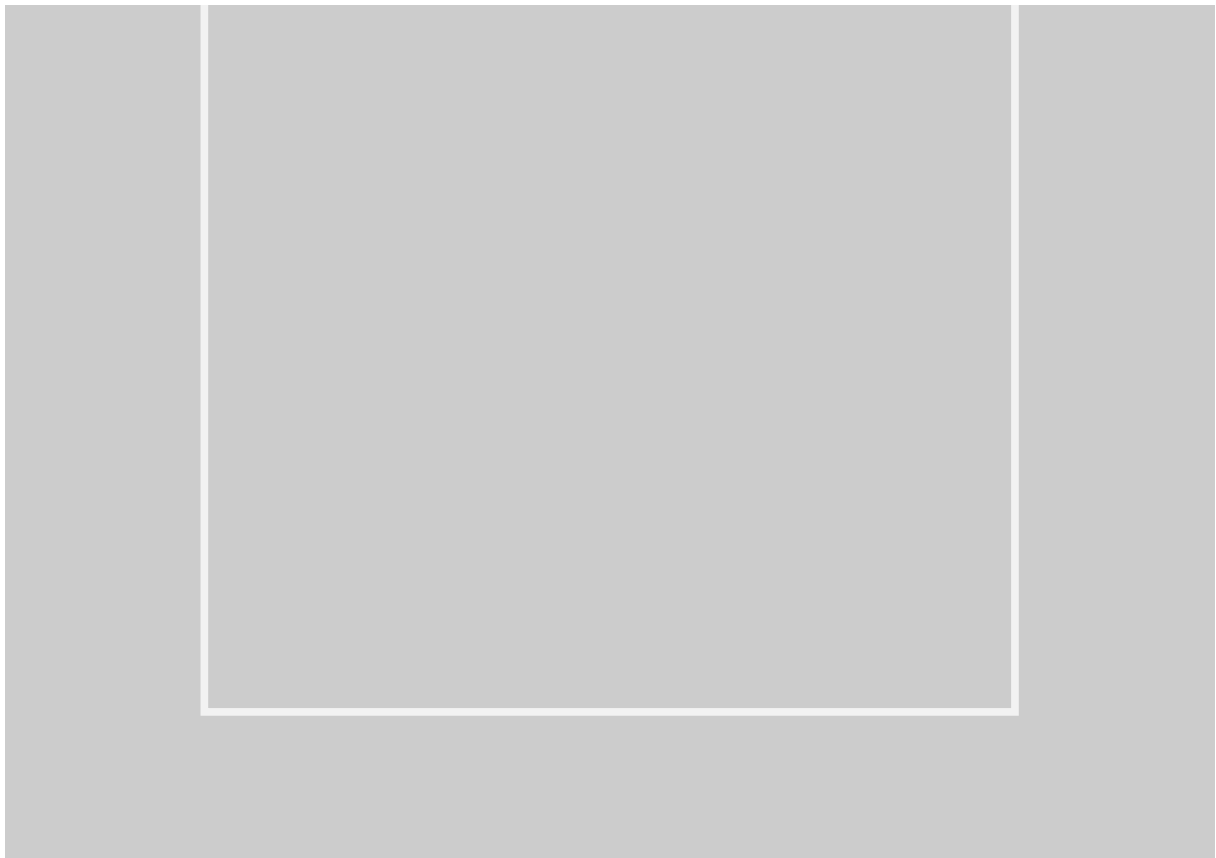


1. 정 관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정관

- 1986. 5. 1 상공부장관인가, 설립
- 1996. 3. 11 개정승인(수산청장)
- 1998. 3. 26 해양수산부 개정인가 제98-2호
- 1999. 3. 16 해양수산부 승인(민법제32조개정)
- 1999. 5. 8 해양수산부 개정인가 제99-4호
- 2001. 3. 13 해양수산부 개정허가 제01-2호
- 2005. 3. 29 해양수산부 개정허가 제05-2호
- 2006. 3. 17 해양수산부 개정허가 제06-2호
- 2008. 4. 16 농림수산식품부 개정허가 제505호
- 2010. 12.10 농림수산식품부 전면개정허가 제6311호
- 2015. 5. 11 해양수산부 개정허가
- 2026. 4. 1 해양수산부 개정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수산물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
2.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수출입 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
4. 수산무역에 관한 약정·협정 등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업

5. 수산무역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7. 회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알선 업무 및 자재구매·판매 등의 사업
8. 수산물 소비·수출 장려 등을 위한 전시회 개최·참가, 홍보 등의 사업
9. 협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부대사업 및 회원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수출입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
2.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수출입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

② 특별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관련 단체 및 연구·교육기관
2. 수산 전문가, 협회 발전 유공자 등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자

제8조 (가입절차 및 등록)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제출하고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7조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

② 회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즉시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년 1월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협회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규정 및 이사회·총회 의결 사항 준수, 회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임의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다.

② 협회 탈퇴 등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협회에 대한 채권·채무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규정 또는 제 의결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로 신용을 떨어지게 하였을 때
3. 협회의 사업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4.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납부기한이나 매년 1월말 기준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3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파산
2. 제명
3. 매년 1월말까지 회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중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4조 (재가입의 제한) ①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2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②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탈퇴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는 탈퇴당시의 의무부담을 소급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법인 등 회원의 대표자) ① 법인·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표자가 협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법인·기관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책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회 업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② 법인·기관회원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에 선정된 대표자, 업무수행기간 등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8인 이상 12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미포함)
5.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회 동의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집행 상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② 명예직임원도 총회의 의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계속하여 3기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 보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최종결산에 관한 정기총회의 기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한다.

④ 회원은 임원이 제12조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제20조 (임원의 권한)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부회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1조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협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고문) ① 협회의 다음 각호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 인의 고문을 들 수 있다.

1. 협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재정관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4장 사무기구 및 직원

제23조 (사무기구) ①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직원) 협회 직원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은 상사의 명에 순종하여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인사관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회의

제27조 (회의의 종류) 협회의 회의는 총회·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8조 (회의의 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개최 요청하였을 때
2. 재적회원 과반수 연명으로 개최 요청하였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개최 10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개정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감사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
3.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5. 협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의결 또는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

제32조 (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등)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 중 회원 각자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 2일전에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총회의 소집 요청
4.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5. 지소·출장소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
6.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회원의 제명 또는 징계처분
8. 예산의 과목조정 및 전용
9. 가입비, 회비 및 기타 부과금 결정
10. 가예산 및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11. 상근임원의 임명 동의
12.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분과위원회) ① 수출입 업무 등의 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업무 회원 중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성립 및 의결은 이사회에 준한다.
- ⑥ 분과위원회 업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가격의 조정
2. 수출입 및 국내거래의 약정체결
3. 수출품목의 생산 및 출하 조절
4. 수출입상품 및 원자재 물량 배정
5. 해외시장 조사·홍보 및 개척
6. 특별회계 운영
7. 그밖에 수출 진흥 및 무역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전무이사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의사록 및 결의록작성) 의장은 의사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분과위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38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특별회계)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출장소 및 분과위원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지출예산은 소속기관별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경비) ① 협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회비
2. 연간회비

3. 부담금 및 그밖에 수입

② 제1항의 회비부담 기준 및 납입방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1조 (가예산) 협회의 수지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때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 (감사)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과부족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43조 (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 의결이 있거나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이를 행한다.

제44조 (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5조 (잔여재산 및 부채처리) 협회의 청산이 완료된 후의 잔여재산 또는 부채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6.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에 선임되는 회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